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9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수진・송재봉・김정호

송옥주 · 용혜인 · 김문수

정태호 • 박홍배 • 한정애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침탈하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계엄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독재적 권력의 유지나 군부의 권력 찬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 선포권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으 로써 계엄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긴급방 위사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미국·프랑 스 등도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하고,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국회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항).
- 나.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폐지함(안 제 2조제6항 삭제).
- 다.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등).
- 라. 계엄의 선포 및 기간 연장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엄의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기간, 시행지역 등과 국무회

- 의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8항 신설).
- 마. 계엄 선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 선포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함(안 제4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 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이전"과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특별조치의 내용은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기간의 연장을 부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거쳐야 한다"를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각적인 계엄의 선포 및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고, 국회의 집회(集會)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계엄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⑦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6항의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대통령은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6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계엄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기간,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이 조 제5항과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결과 및 그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시행일시"를 "시행일시,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그 통고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集會)"를 "집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무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 권능행사의 제한 금지 등) 국회의 권능행사와 국회의원의 활동은 계엄의 선포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없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거주·이전"을 "수색"으로, "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를 "집회 또는 결사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조치내용은 제2조제8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로 한 다.

제11조제1항 중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한다.

제11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제2조제7항에 따른 계엄 기간의 연장을 부결한 때에는 그 계엄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가계엄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거쳐 미리 국 <단서 신설>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즉각적인 계엄의 선포 및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고, 국회의 집회(集會)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삭 제> 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계엄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신 설>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 저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이유, 종류, <u>시행일시</u>,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저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 告)하여야 <u>한다</u>.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② ---

⑦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6	항
의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u>
⑧ 대통령은 제5항 본문 및	단
서, 제6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
청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계
엄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	시,
시행기간, 시행지역, 계엄사	:렁
관, 이 조 제5항과 제6조제2	/항
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결과	및
그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	여
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	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u>시행일시, 시행기</u>	<u>간</u>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u>하고,</u> 그 통고가 도	달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u>집회(集會)</u>를 요구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u>수색·</u>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② ~ ④ (현행과 같음)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집회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
포는 무효로 한다.
제8조의2(국회 권능행사의 제한
금지 등) 국회의 권능행사와
국회의원의 활동은 계엄의 선
포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
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u>수색</u>
집회
 또는 결사에
- 경우 조치내용은 제2조제8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 (સંસીની નો ઇ)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하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국방부장<u>관 또는 행정안전</u> 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 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생략)

<신 설>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u>삭 제></u>

②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 하거나 제2조제7항에 따른 계 엄 기간의 연장을 부결한 때에 는 그 계엄의 효력은 즉시 상 실된다.

<삭 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가 계엄과 관련된 논의 등

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